6 (第81回—運營第4次)

대로 可決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1. 감사의 목적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6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운영의 합법성,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시정함으로써 자치입법 기능, 예산심의기능 및 집행기관 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시키는데 있음.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내지 제6조

2. 감사일정 : 1995.11.25(토)(1일간)

3. 감사대상기관

위원회선정대상기관	본회의의결대상기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없 음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 무 보 조 직 원
위원장	국민회의	김수복	운영전문위원 양재대
간 사	국민회의	김홍규	전문위원실직원
〃	민자당	김성호	·6급 박찬봉
위 원	국민회의	김종래	·6급 선종길
〃	〃	양경숙	안내직원 기능10 김수진
〃	〃	오광열	
〃	〃	우원식	속기사(2명)
〃	〃	정진우	녹취요원(2명)
〃	〃	정태종	타자요원(1명)
〃	〃	정한식	
〃	〃	최형신	
〃	〃	황인명	
〃	민자당	김영희	
〃	〃	홍순철	
〃	민주당	송인회	
〃	〃	홍락원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95.11.25(토) 10:00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회의실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6. 주요 감사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감사자료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 ○기타사항	○'9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95년도 예산 편성, 집행 및 회계감사 등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의정활동 및 시정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7.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자료 제출
   가. 1995년도 각종 업무추진 계획 및 추진 실적
   나. 1994회계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현황
   다. 1995회계년도 세입·세출 집행 현황
   라. 1995년도 감사원 감사 등 각종 감사시 지적사항과 그 시정조치 결과
   마. 1996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소요예산 현황
   바.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각 감사위원은 서류(자료)제출요구목록을 '95.11.4까지 사전 제출
8. 감사 요령
   가. 감사방법
   (1) 감사는 시의회사무처 운영전반에 관한 감사자료제출요구,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
   (2)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 또는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
   나. 감사자료 제출요구
   (1) 감사를 위한 서류는 본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및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함.
   (2) 각 감사위원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첨서식(서류제출요구목록)에 기재한 후 운영위원장에게 제출
   (3) 위원장은 요구자료목록을 수합한 후 의장에게 송부하고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감사실시 3일전까지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
   다. 증인 등의 출석요구
   (1)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장 및 담당관(3명)
   ※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라. 감사진행순서
   (1) 감사실시선포(위원장)
   (2) 위원장 인사
   (3) 피감사기관 선서
   (4)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5) 업무현황보고 청취
   (6) 시책질의 및 답변(현지확인, 증언청취)
   (7) 감사종료 인사(위원장)
   (8) 감사종료 선언
   마. 유의사항
   (1)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운영위원회소관 사무
   (2) 감사의 한계(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6)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됨.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수 없음.

(3) 이해관계인의 제척·회피(동법시행령 제17조의7)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참여할 수 없음.

(4) 감사상의 주의의무(동법시행령 제17조의8)

감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 및 정당한 사유없이 비밀누설 금지

(5) 감사공개원칙(동법시행령 제17조의9)

감사는 공개하되, 본회의·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현지확인,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요구—3일전에 통보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1항)

9.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가. 방침

(1)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

(2)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토록 함.

나. 작성방법

(1)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 의견서를 사전에 배부

(2) 감사직후 전문위원은 감사결과 의견서 수합

(3) 전문위원은 이를 종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4) 위원장은 위원회에 보고한 다음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 채택 처리

(5) 본회의 의결

※첨 부 : 1. 선서문(안) 1부(수록 생략)

2. 서류(자료)제출요구목록 서식 1부(수록 생략)

3. 감사결과의견서 1부(수록 생략)

---

4. 1995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採擇의件(綜合)

(11時 19分)

○委員長代理 金洪奎 議事日程 第4項 1995年度 서울特別市 行政事務監査計劃書 採擇의 件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地方自治法施行令 第17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거, 行政事務監査計劃書를 所管 常任委員會別로 作成 採擇한 후, 本會議의 承認을 얻어 行政事務監査를 施行하도록 規定하고 있으나, 議會 運營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所管 常任委員會別로 作成 議決한 行政事務監査計劃書를 서울特別市議會委員會條例 第5條第1項第1號 科目의 規定에 의거, 運營委員會에서 일괄수합 정리하여 採擇한 후 本會議의 承認을 얻어 行政事務監査를 實施코자 합니다.

參考로 監査期間은 11月 21日부터 29日까지 9日間이고, 監査委員의 편성은 별도의 特別委員會를 구성하지 않고 所管常任委員會別 所屬委員 全員이 監査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事務補助職員으로서는 事務處 全職員이 해당 분야별로 支援토록 하겠습니다.

監査對象機關으로는 地方自治法施行令 第17條의3第1項第1號, 第2號 및 第4號 規定에 의하여 所管常任委員會에서 선정한 80個 機關과 同法施行令 第17條의3第1項第3號, 第5號 및 第6號 規定에 의하여 本會議 議決對象機關인 서울特別市敎育廳 및 市政開發硏究院 等 15個 機關으로 總 95個 機關이 되겠습니다.

기타 委員會別 監査日程 및 場所, 監査要領 및 資料提出 方法 等 자세한 內容은 미리 배부해 드린 監査計劃案을 參考하여 주시고, 該當 常任委員會 議決을 존중하여 議事日程 第4項 1995年度 서울特別市 行政事務監査計劃案을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

(參 照)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 목적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6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